

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0년12월 29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12 . 26 평창군수(건설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12. 26
- 다. 상정일자 : 제8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제2차조례특위(2000.12.29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과장 박현창)

가. 제 안 이 유

- 행정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양수기 반환조치시 미사용 선납사용료에 대한 반환금 기준마련.

나. 주 요 골 자

- 양수기를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중 사용일을 제외한 사용료는 반환한다(안제9조 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일부 양수기를 일부 날짜만 사용하고 반환하여도 기히 납부된

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던 것을 날짜 계산하여 미 사용한 날짜 만큼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는 것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.

○ 기타 법령형식·자구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부

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3항중 "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"를 "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중 사용일을 제외한 사용료는 반환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